

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(2차)

창원 소재 기업의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청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내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『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』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7일

(재)창원산업진흥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
- 모집기간: **2026. 5. 27.(수) ~ 8. 21.(금), 18:00까지**
- 모집인원: **청년 40명 내외 (기업당 최대 3명)**
 - * 채용 적격 청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
- 평가방법: **수시평가** ※ 2차 모집 목표인원(40명 내외)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: (기업)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
(청년) 18 ~ 39세 이하 **관내 미취업*** 청년
 - 2008년 1월 1일 ~ 1986년 12월 31일 출생자
 -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상한 최대 3년 연장 가능
 - * 미취업자란 채용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
- 지원내용: (기업) 일경험 수당^{월150만원×3개월}, 멘토수당^{월5만원×3개월}
(청년) 교통비^{월10만원×3개월}, 인센티브^{50만원×1회*}
 - * 인센티브 :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추가 3개월 근로 유지 시 지급
- 지원기간: **3개월**

II 세부 지원내용

참여대상

- 기 업 : 창원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(중견기업 포함), 단체

*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**모집공고 이후 청년 모집을 위해 워크넷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인** 등록 1회 이상(15일 이상) **필수**

○ 청 년

- 18세 이상 39세 이하*의 창원시 미취업자

*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상한 최대 3년 연장 가능

* 참여기간 중 창원시 주민등록 유지 필수

-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가능

- 1개월 이내 미전입 시 참여 배제 및 수당 미지급

* 참여 청년이 기업 대표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일 경우 참여 제한

* 공고일 기준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자는 참여 제한

□ 지원내용

○ 기업체 일경험 지원

- 참여청년 일경험 인건비 **월 150만원**(기업 부담금 자율), 청년 교통비 **월 10만원** 지원

- 기업 담당자 멘토 수당 **월 5만원** 지원(3개월, 총 10시간)

- 4대 보험 및 연장·휴일 근로수당은 기업 부담

- 인건비 매월 지급 * 월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

- 청년 인센티브 **500,000원** 지원

* 인건비 지원 종료 후 3개월 이상 근로 유지 시 지급 (단, 예산 범위 내 지원인원 추가 가능)

- 신청한도 : **기업당 최대 3명**

○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(참여청년 의무교육 필수)

- 교육방법 : 현장직무 및 직무소양교육 운영

┌ ① 현장직무교육 : 현장 OJT 교육 등

└ ② 직무소양교육 : 직업트렌드, 커뮤니케이션 스킬, 업무분야별 직업실무 역량
(문서작성, 마케팅 등) 기초 및 강화 교육 등

- 추진방법 : 오프라인 교육 운영

┌ ① 현장직무교육*(10h): 현장 재직자를 통한 교육 실시

└ ② 직무소양교육(5h): 전문강사를 활용한 직무 교육

* 현장직무교육 : 참여기업 내 현장직무교육 담당 멘토(직원)에게 멘토수당 지원

-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- 일반유흥주점업
 - 무도유흥주점업
 - 기타 주점업
 -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 - 무도장 운영업 등
- ②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
- 단란주점
 - 유흥주점
 - 노래연습장업
 - 비디오감상실업
 - 무도장업
 - 복권발행업 등
- ※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)은 가능
-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
- ④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야기 등 도 및 시군이 일경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(직장내 괴롭힘, 임금체불 성희롱 등)
- 임금체불 기업
 -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기업
 - 성희롱 발생 기업 등

< 표준산업분류코드(신청제외 대상) >

업종 분류	산업 분류코드 (KSIC)	신청 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4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5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 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22 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5,56	숙박업, 주점업, 비알콜 음료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 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 및 임대업	68	부동산업, 임대업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
수의업	731	수의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	스포츠서비스업, 오락관련 서비스업, gambling 및 베팅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	이용업, 미용업, 욕탕업, 마사지업,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~98	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※ 세부 제외 업종은 「표준산업분류코드 신청 제외 업종」 기준 적용

IV

평가기준 및 방법

- 평가방법: 평가표에 따른 서류평가(정성·정량)를 실시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
- 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구분	배점
재무건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출액(2개년도 매출성장률 포함)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 등 세금 납부 현황 	30
복리후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통근버스, 교통비, 차량 유지비 기숙사, 주택자금 지원 교육비 지원,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, 재택근무 등 워라벨 관련 지원 제도 일-가정-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등 	10
청년고용 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년고용 현황 	10
기업 성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사소개 및 주요생산품 기술개발계획 및 발전 가능성 	40
기술인증 및 과제 수행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인증 및 정부과제 수행실적(최근 3년) 	10
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증기업당 가점 2점 (최대 8점) 장애인 고용기업, 일자리오피스기업, 청년친화기업, 가족친화기업, 여성기업인 : 각 인증기업 당 가점 2점 	최대 8점

- ※ 동점 시 기업 성장성 점수가 높은 기업 선정
- ※ 서류 미제출 시 배점 0점 처리

V

추진일정

1) 모집공고 및 접수 : 2026. 5. 27.(수) ~ 8. 21.(금) 18:00까지

- 접수 기간 내 신청서 제출



2) 기업 선정평가 : 수시

- 선정평가 ※ 2차 모집 목표인원(40명 내외)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

3) 결과 통보 : 수시 평가 후 매월 예정

- 기업 선정 결과통보
- ※ 공고일 이후 채용 청년에 한하여 지원 가능



4) 사업안내 : 수시

- 선정기업 필수 참석



5) 청년 채용 통보 및 적격 검토

- 기업은 2026년 8월 28일까지 채용 통보
※ 기한 내 미채용 시 지원 종료



6 사업 수행

-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행
※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- ※ 상기 일정은 창원산업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※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행 도중 사업 포기 및 지원 중단 상황 발생 시 지원 종료
- ※ 지원종료 시 추가지원을 위한 후보기업도 금번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예정
- ※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
- ※ **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지원하며, 공고일 이전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**

VI 사업 신청 및 접수

○ 접수기간: 2026. 5. 27.(수) ~ 8. 21.(금) 18:00까지

○ 신청방법

- 홈페이지 접수 : (www.cwip.or.kr - 사업신청 - 지원사업 신청)
- 공고명 : “일경험”검색
-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(sonhj@cwip.or.kr) 제출

○ 신청서류 ※ 해당 서류 원본 제출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참여 신청서 1부	[서식 1]
2	운영 계획서 1부	[서식 2]
3	참여기업 확인서 1부	[서식 3]
5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8	법인등기부등본 1부	법인에 한함
9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발급기준일 : 2026년 5월 이후
10	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	발급기준일 : 2026년 5월 이후
11	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	대상 : 전체근로자 조회기간 : 1년 전 ~ 사업신청일 예시) 2025.5.27. ~ 2027.5.26.
12	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(2023년~2024년) 1부 (단, 제출가능 기업에 한 해 '25년 재무제표 제출가능)	※ 재무제표상 매출 1억 이하 기업은 매입이 있으면 최근 2개년도 「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」 함께 제출
13	가점 증빙서류 ※ 우대사항: 장애인 고용기업, 일자리 으뜸기업, 청년친화기업, 가족친화기업, 여성기업	우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(미제출시 불인정) ※ 장애인 고용기업 : 해당 직원 복지카드 제출

- 담당자: 창업인재양성팀 손혜정 선임연구원
(☎ 055-716-7745, e-mail : sonhj@cwip.or.kr)
- 유의사항
 -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-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·누락, 관련 증명서 미첨부, 연락 불능 등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 - 소정의 양식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cwip.or.kr) 공고란에서 다운받은 후 사용. 끝.